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95 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 이유

본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련·운영 중이나, 유관기관 신설 등에 따른 재해대책기구 정비와 지원계획수립 시기, 확인서 발급 등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해 개정 추진

## 2. 주요 개정 내용

###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14.1) 및 기금신설(“15.1)에 따른 개정

◦ 개정내용(제4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재해중소기업대책반,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	각급 재해대책기구에 중기청, 중진공, 중기중앙회, 신 키보, 신보중앙회 관계자로 구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대책반), ‘이사장(심의위원회), ‘지역본부장(지역 대책반)’을 대책기구에 추가
재해자금의 조성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개정사유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재해자금('15년 300억원) 지원과 기금의 위탁운영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해대책기구 참여 필요

② 직제개정에 따른 지방청 상황실 운영조직 변경

◦ 개정내용(제11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지방청 상황실 운영	총괄반장은 공공판로지원과장(1급청), 기업환경개선과(팀)장(2급청)	총괄반장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 *현행 우리청 직제시행규칙상 재해 지원업무는 「창업성장지원과장」이 담당

◦ 개정사유

- 지방청 상황실 총괄반장을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재해 담당부서로 현행화

③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시기 1개월 단축

◦ 개정내용(제13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중기청 : 3월말 지방중기청 : 4월말	중기청 : 2월말 지방중기청 : 3월말

◦ 개정사유

-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방안 수립시기를 앞당김

④ 피해사실 확인 및 확인서 발급 현황 통보

◦ 개정내용(제15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피해사실 확인	시장 군수 구청장 ⇨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기관에 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 ⇨ 발급현황을 "별지 5호" 서식으로 중소기업청에 통보

◦ 개정사유

- 지자체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후 용자기관 통보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재해자금 소요파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발급현황을 증기청에 제출토록 규정

⑤ “별지” 서식

◦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 현황」 서식	자금·보증 기관이 중진공 등 4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별지 1호”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서식	-	“별지 3호” 신 설
「피해신고 및 확인증 발급 현황」 서식	-	“별지 5호” 신 설

◦ 개정사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실적을 서식에 반영
- 재해 중소기업이 재해자금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확인증이 필요하며, 제15조 개정에 따라 “피해신고 및 확인증 발급 현황” 서식 필요

**3. 의견제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우편번호 : 302-70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참조 : 비상안전담당관실, 전화 042-481-6871, 팩스 042-472-32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붙임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 - 00호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정	2000.10.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14호
개정	2002. 8.1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12호
	2003. 2.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 4호
	2005. 4.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0호
	2005. 8.1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9호
	2006. 3.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 9호
	2007. 1.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8호
	2008. 8.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9호
	2010. 3.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2호
	2011. 3.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3호
	2012.11.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8호
	2013. 7. 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1호
	2015. 3. 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00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3. “재해 중소기업”이란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단, 인적재난의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에 한정한다.

**제3조(지원유형)** ① 중소기업청장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인적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적재난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전통 시장 인적재난의 경우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면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재해 중소기업중앙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재해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재해중소기업 지원체계

**제5조(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해중소기업의 복구지원에 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이하 “중앙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중앙대책반은 중소기업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며, 중소기업청 각 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담당이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로 구성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③중앙대책반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중소기업 종합상황실 운영
2.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인력 등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및 위원회 상정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재난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장 군수 구청장,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재해중소기업 지원대책 업무 협의
5. 기타 재해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추진

**제6조(재해대책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제19조제2항에 의한 재해자금 추가조성 등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에 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7조(초기대응반)** ① 중소기업청장은 자연재해가 우려되거나 인적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대응반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초기대응반장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② 초기대응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재해중소기업지원방안 수립
2. 지방청에 대한 재해대비활동 점검
3. 본청상황실 설치 요청

**제8조(재해담당자)** ① 관할지역내의 재해중소기업지원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해중소기업지원 정부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의 재해 담당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 내 재해중소기업 지원대책 수립·시행
2. 재해 발생시 지방청 상황실, 재해복구 현장사무소 운영
3. 재해업체 현장점검

4. 연중 재해 대비상황 점검활동
5. 상시 재해관련 상황보고 체제 유지

**제9조(재해상황 보고체계)** ① 지방청 재해담당자는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초기대응반장의 재해현황 확인 요청이 있을시 즉시 관할 구역 내 재해발생 여부 및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초기대응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상황보고를 통해 초기대응반장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을 즉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 ① 지방중소기업청에 지역별 재해중소기업 대책반(이하 “지역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반의 반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5.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7. 관할 시·도의 중소기업 지원담당 과장

③ 지역대책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중소기업청에 재해 중소기업 상황실 운영
2. 중앙대책반의 기본방침에 의거 관할내의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한 세부방침 결정
3. 지역 내 재해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조
4.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설치·운영

**제11조(상황실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재해 및 복구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재해상황실(이하 각각 “본청 상황실” 및 “지방청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② 본청 상황실은 기획조정관을 실장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4개 지원반(상황반, 자금지원반, 보증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구성한다. 지방청 상황실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상황실장으로하며, 재해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4개 지원반(상황반, 자금·보증지원반, 인력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③ 지방청 상황실은 관할지역내 재해중소기업의 일일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본청 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청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되는 재난상황 파악 및 관련사항 협의
2. 지방청 상황실을 통하여 일일 지역별 재해 및 복구지원현황을 총괄하고,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3. 중앙대책반의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⑤ 지방청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의 일일 재해 및 복구지원 현황을 종합하여 본청 상황실에 보고
2. 지역대책반의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3. 시장 군수 구청장의 상황실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복구지원 관련 사항 협의

**제12조(재해복구현장사무소 설치·운영)**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재해현장에 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장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확인
2. 재해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복구, 인력지원 등 긴급복구 지원
3. 기타 현장복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추진



### 제3장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 제13조(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해당연도 2월말까지 연도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중소기업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안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보증 및 인력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보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 긴급 현장복구인력 구성 및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당연도 3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 이 지침에 의한 지원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15조(피해 신고 및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하 “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여행 또는 해당지역 교통·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현황을 별지 5호 서식에 의해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현지사정으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해 중소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 제4장 긴급현장 복구인력 지원

**제16조(긴급현장·설비복구 지원)**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해발생 초기에 관할지역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 긴급 현장 및 설비복구 지원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현장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생산설비 가동 복구인력, 지원기간 및 방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긴급 현장지원을 위한 자체예산이 부족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재해예산 및 본청의 예산 등으로 긴급지원예산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인력지원단 구성·운영 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관할지역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 및 설비복구기술인력지원단(이하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원봉사요원
2.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경영·정보화기술지도 인력
3.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력
4. 대학생 등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③ 기술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설비생산업체 전문기술자
2.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기술지도 인력
3.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생산설비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18조(설비복구 기술인력지원)** ① 기술인력지원단은 전기, 기계 등 생산설비 복구와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건물파손 복구 등을 지원한다.

② 기술인력지원은 업체당 20일내 이내로 하며, 기술지도비용은 재해 중소

기업당 1백만원 이내에서 국고로 지원한다. 다만, 지도위원의 교통비 등 출장비는 업체부담으로 한다.

③ 기술인력지원단의 지원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5장 재해자금 지원

**제19조(재해자금의 조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매년 재해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재해발생 등으로 제1항에 의해 조성된 자금이 소진되어 부족해지는 경우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가용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예산 등에서 추가로 재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방식 및 한도)** ① 재해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금액은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용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순수 신용방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에 의하되, 해당기업이 원하는 경우 보증서부 또는 담보부 방식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의한다. 다만, 소상공인지정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신용 또는 보증서부, 담보부 방식 등으로 은행을 통한 대출에 의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금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등급, 신용상태평가 등에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용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1조(지원조건 등)** 재해자금의 상환기간과 대출금리 등은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용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지원조건을 따르되, 일반 정책자금에 비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15조제3항에 따른 영업결손액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제2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재해중소기업이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자금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여행 또는 해당지역 교통·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자금신청을 하지 못한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 받은 중진공지역본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전자금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설자금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재해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을 1년 6월 이내에서 유예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② 재해 중소기업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중진공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진공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자금 보증 신청 서류, 미비한 서류의 보완, 심사절차,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선정, 사후관리 등 재해자금 보증 지원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 운용요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 기준 등 용자 보증기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재해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재해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제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28호, 2012.1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3-31호, 2013. 7.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3. 00.>

##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 현황

(      년      월      일)

피해업체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합 계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OO지방청						

전통시장 피해현황 (단위 : m<sup>2</sup>/개, 천원)

구 분	공동구간		개별점포	
	피해물량	피해금액	피해물량	피해금액
OO지방청				

※ 피해물량(예시) : 아케이드, 담장, 간판, 천막, 무대□공연장, 지붕 등

인력지원 실적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업체수	인 원	지원금액	누계(업체/인원)
기술인력				
단순인력				

※ 기술인력 : 기계설비 생산업체 및 수리 전문가 등 활용실적(연인원 기준)  
 단순인력 :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투입실적(연인원 기준)

자금 및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자금지원		보증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 기 금	기술보증 기 금	지역신용 보증재단
신 청	건 수					
	금 액					
지 원	건 수					
	금 액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중소기업 □ 소상공인)

(앞쪽)

###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성명(대표자/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신사명: )

###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건축물	② 기계시설	③ 완제품	④ 원재료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사업자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금액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용자신청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사업자등록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금액	신고	⑥	⑦	⑧	⑨
	확정	⑥	⑦	⑧	⑨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용자신청 여부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主) 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용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위하여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판단을 위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공 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재해구호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다른 이재민 등의 구호 및 의연금품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 및 피해 내용을 구호기관 및 배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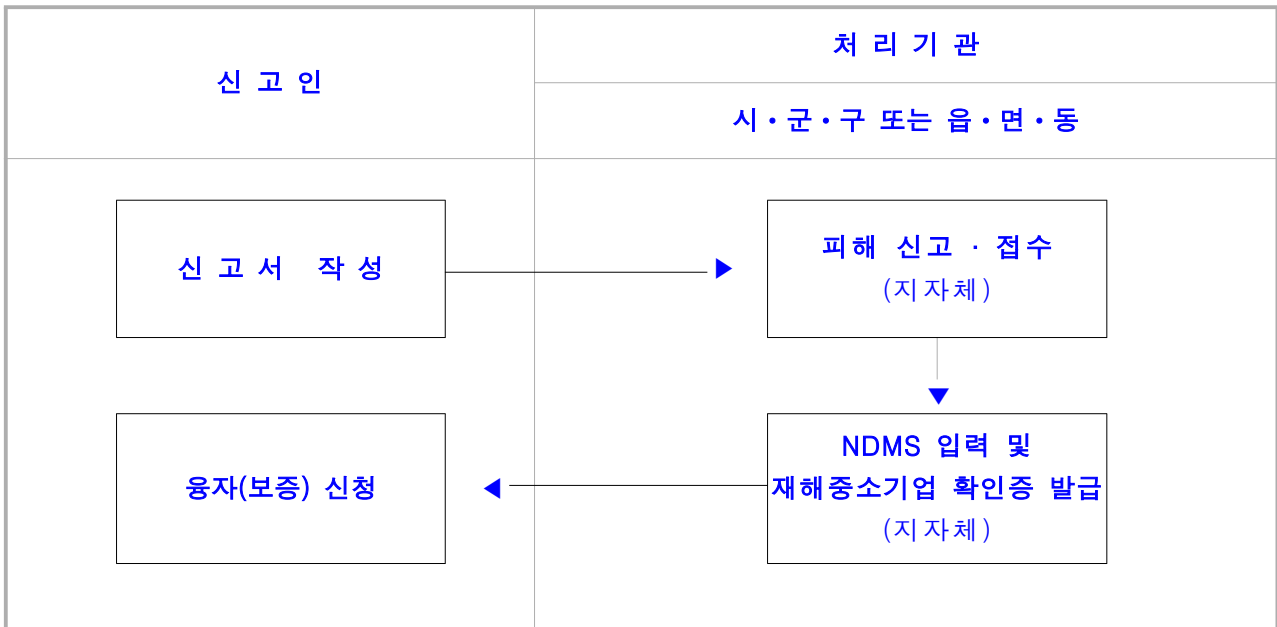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통장, 이웃]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
  -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대표자 성명과 업체명을 반드시 기입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수, 고등학생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소상공인만 기입합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와 피해 시설물 주소지가 다른 소상공인, 무허가(주택 제외)·비규격 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 가입자는 신고 제외(단, 무등록 공장은 신고대상임)
3.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금액란에는 천원 단위로 기입하되, 확정란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4.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물/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용자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 시중은행 각 지점(단위조합은 제외)  
**보증기관**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천 원)		
피해금액 (천 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기타	합계		
	용자 및 용자금액은 용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 안에 용자(보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읍장·면장·동장

○ ○ ○    (직 인)

[별지 제4호 서식]

## 재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 (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상자금		상 환 도 래 일		상 환 도 래 대 출 금
	상환유예 내용	(*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대상자금		상 환 만 기 일		대 출 잔 액
	상환기간 연장내용	(*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지원 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sup>00</sup>년 ○월 ○일

○○ 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 3. 00.>

피해신고 및 확인증 발급현황

연번	발급일자	시군구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신고금액 (천원)	확인금액 (천원)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 및 인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와 <u>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u>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제4조 및 제11조에----- -----.</p>
<p>제5조(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① (생략)</p> <p>② 중앙대책반은 중소기업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며, 중소기업청 각 국장, <u>중소기업진흥공단</u>·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담당이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로 구성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p>	<p>제5조(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중소기업진흥공단</u>·<u>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u>·----- ----- -----.</p>
<p>제6조(재해대책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u>중소기업진흥공단</u>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p>	<p>제5조(재해대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중소기업진흥공단</u> 이사장, <u>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u> 이사장, ----- ----- -----.</p>

<p>제10조(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p> <p>① (생략)</p> <p>② 지역대책반의 반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li> <li>2.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장</li> <li>3.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li> <li>4.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li> <li>5.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li> <li>6. 관할 시 도의 중소기업 지원담당 과장</li> </ol> <p>③ (생략)</p>	<p>제10조(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u>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u></li> <li>3.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장</li> <li>4.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li> <li>5.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li> <li>6.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li> <li>7. 관할 시 도의 중소기업 지원담당 과장</li> </ol>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상황실 운영) ① (생략)</p> <p>② 본청 상황실은 기획조정관을 실장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4개 지원반(상황반, 자금지원반, 보증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구성한다. 지방청 상황실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u>공공판로지원과장(1급청), 기업환경개선과(팀)장(2급청)</u>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4개 지원반(상황반, 자금 보증지원반, 인력지원반, 전통시장 지원반)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한다.</p>	<p>제11조(상황실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재해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총괄반장으로 ----- ----- -----.</p>
<p>제13조(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p> <p>① 중소기업청장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중소기업청, 관계 중앙행정 기관, 시 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보받은 지방중소</p>	<p>제13조(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p> <p>① ----- 2월말까지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기업청장은 지역별 긴급 현장복구인력 구성 및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 ----- -----3월말까지 ----- -----.</p>
<p>제14조(지원대상) 이 지침에 의한 지원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받은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p>	<p>제14조(지원대상) -----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 -----.</p>
<p>제15조(피해 신고)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지원 대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그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재해 중소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 금액으로 한다.</p>	<p>제15조(피해 신고 및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현황을 별지 5호 서식에 의해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 -----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현지 사정으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 -----.</p>
<p>제19조(재해자금의 조성) ① 중소기업청은 재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매년 재해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9조(재해자금의 조성) ① -----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지원방식 및 한도) ① 재해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금액은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u>중소기업정책자금</u> 용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u>재해자금</u>은 순수 신용방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에 의하되, 해당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보증서부 또는 담보부 방식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의한다. 다만, <u>소상공인지원자금</u>의 경우에는 신용 또는 보증서부, 담보부 방식 등으로 은행을 통한 대출에 의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20조(지원방식 및 한도) ① ----- ----- ----- <u>중소기업정책자금</u> 및 <u>소상공인정책자금</u> ----- -----.</p> <p>② <u>중소기업정책자금</u>은 ----- ----- ----- -----.</p> <p>다만, <u>소상공인정책자금</u>의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지원조건 등) 재해자금의 상환기간과 대출금리 등은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u>중소기업정책자금</u> 용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지원조건을 따르되, 일반정책자금에 비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지원조건 등) ----- ----- -----<u>중소기업정책자금</u> 및 <u>소상공인정책자금</u> ----- -----.</p>
<p>제22조(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할 수 있다. 단, 제15조제3항에 따른 영업결손액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p>	<p>제22조(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 ----- ----- ----- <u>제70조제1항제5호</u>에 ----- ----- ----- ----- -----.</p>
<p>제25조(준용규정) 자금신청 서류, 미비한 서류의 보완, 심사절차,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선정, 사후관리 등 <u>재해자금</u> 지원에</p>	<p>제25조(준용규정) <u>자금 보증신청</u> 서류, ----- ----- ----- <u>재해자금 보증</u> 지원에</p>

<p>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 운용요강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p>----- 기금 운용요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 증 운용기준 등 용자 보증기관의 ----- -----.</p>
<p>제2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3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27조(존속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00일까지로 한다.</p>
<p><b>【별지 제1호 서식】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 현황</b> ◦ 자금 및 보증지원 실적집계표에 증진공,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 4개 기관 명시</p>	<p><b>【별지 제1호 서식】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 현황</b>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칸 추가</p>
<p><b>【별지 제2호 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중소기업 소상공인)</b></p>	<p><b>【별지 제2호 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중소기업 소상공인)</b> ◦ 피해신고서 뒤쪽 “신고절차도” 수정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절차 추가</p>
<p>&lt;신 설&gt;</p>	<p><b>【별지 제3호 서식】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b></p>
<p>&lt;신 설&gt;</p>	<p><b>【별지 제5호 서식】 피해신고 및 확인증 발급 현황</b></p>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3. 00.>

##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 현황

(      년   월   일)

피해업체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합 계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OO지방청						

전통시장 피해현황 (단위 : m<sup>2</sup>/개, 천원)

구 분	공동구간		개별점포	
	피해물량	피해금액	피해물량	피해금액
OO지방청				

※ 피해물량(예시) : 아케이드, 담장, 간판, 천막, 무대□공연장, 지붕 등

인력지원 실적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업체수	인 원	지원금액	누계(업체/인원)
기술인력				
단순인력				

※ 기술인력 : 기계설비 생산업체 및 수리 전문가 등 활용실적(연인원 기준)  
 단순인력 :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투입실적(연인원 기준)

자금 및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자금지원		보증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 기 금	기술보증 기 금	지역신용 보증재단
신 청	건 수					
	금 액					
지 원	건 수					
	금 액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중소기업 □ 소상공인)

(앞쪽)

##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성명(대표자/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신사명: )	

##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건축물	② 기계시설	③ 완제품	④ 원재료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사업자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금액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용자신청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사업자등록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금액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용자신청 여부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主) 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용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위하여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판단을 위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공 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재해구호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다른 이재민 등의 구호 및 의연금품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 및 피해 내용을 구호기관 및 배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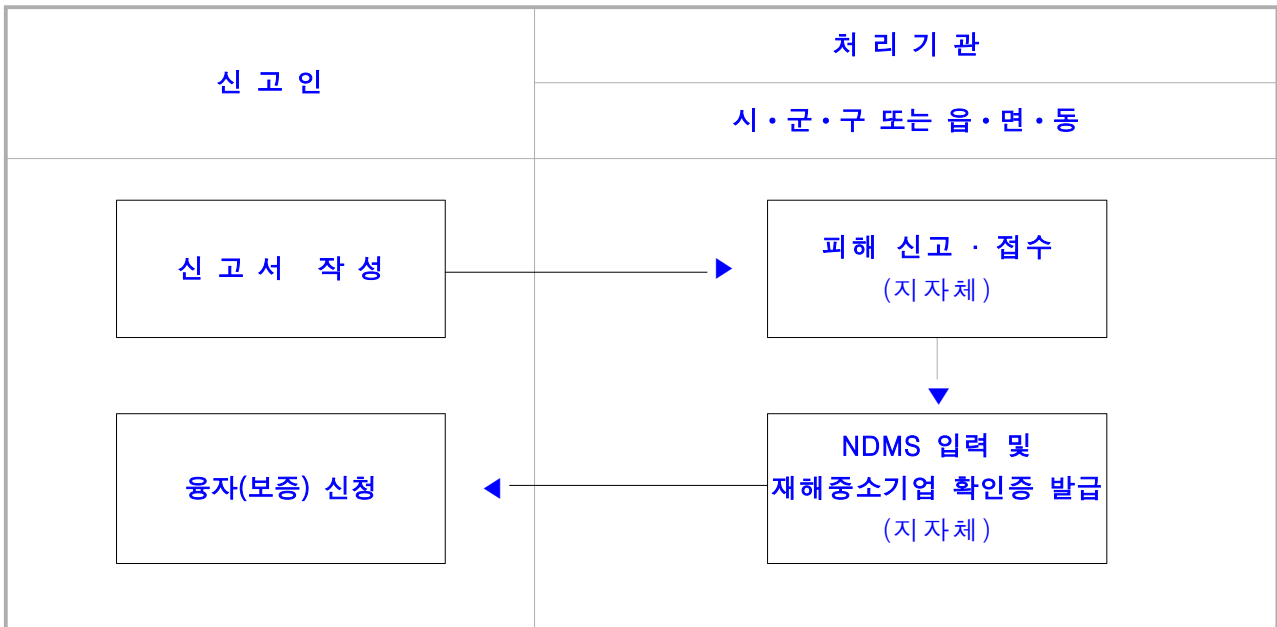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통장, 이웃]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
  -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대표자 성명과 업체명을 반드시 기입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수, 고등학생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소상공인만 기입합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와 피해 시설물 주소지가 다른 소상공인, 무허가(주택 제외)·비규격 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 가입자는 신고 제외(단, 무등록 공장은 신고대상임)
3.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금액란에는 천원 단위로 기입하되, 확정란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4.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물/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용자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 시중은행 각 지점(단위조합은 제외)  
**보증기관**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천 원)		
피해금액 (천 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기타	합계
	용자 및 용자금액은 용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 안에 용자(보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읍장·면장·동장

○ ○ ○ (직 인)

【별지 제5호 서식】

피해신고 및 확인증 발급현황

연번	발급일자	시군구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신고금액 (천원)	확인금액 (천원)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